

—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6월 19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6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6월 28일

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예관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모토지구획정리지구내 행정구역변경 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상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2개이상의 동에 걸쳐게 됨에 따라
- 불합리한 경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키 위함

- 상모동 일부 11필지 2,928.0m² → 사곡동
- 상모동 일부 10필지 2,928.4m² → 임은동
- 임은동 일부 31필지 62,415.8m² → 상모동
- 사곡동 일부 11필지 21,112.3m² → 상모동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4제2항
-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

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찬성의견서 채택(별지)

—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— 심 사 의 건 서

- 상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2개이상의 동에 걸쳐 됨에 따라
- 불합리한 경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하는 행정구역변경안은 의견제시안대로 추진토록 할 것

【주요내용】

- 상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내의 행정구역(행정동 및 법정동)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조정
 - 상모동 일부 11필지 2,928.0m² → 사곡동
 - 상모동 일부 10필지 2,928.4m² → 임은동
 - 임은동 일부 31필지 62,415.8m² → 상모동
 - 사곡동 일부 11필지 21,112.3m² → 상모동